



# 대구대학교와 강남대학교 간의 학점교류협약서

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서는 대구대학교와 강남대학교 간에 체결한 학술교류협약서에 의거, 양 대학 학부 간 학생교류 및 학점의 상호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대상)** 본 협약서는 양 대학 간에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재학생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교과목 이수)** ① 양 대학은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수강신청 공고기간(계절 학기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공고기간)에 상대방 학교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소속대학의 총장은 학점교류 수학희망자를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추천하여야 하며, 수강대학의 총장은 추천된 교류학생에 대한 수학허가를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교류학생의 수강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.

④ 교류과목의 이수교과목 인정과 취득학점 인정 등에 대한 사항은 소속대학의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.

**제4조(등록금)** 교류대학에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대학은 학생에게 등록금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. 단,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수강대학에 납부한다.

**제5조(성적처리)** 교류학생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소속대학의 수업관련 부서로 통보한다.

**제6조(기타)** ① 교류학생은 수강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교류학생은 수강대학의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으며, 편의시설(도서

관, 실험실습실, 기타 학생복지시설 등)을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이용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대학에서 책임을 진다.

- ③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양 대학의 수업담당 부서 총괄 책임자 간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.
- ④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 대학의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시행일)** 본 협약서는 실무대표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,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대학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8월 7일



**강남대학교**  
KANGNAM UNIVERSITY

교학부총장 유 양 근

유 양근



**대구대학교**  
DAEGU UNIVERSITY

교무처장 함 재 용

함 재용